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21호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전문성을 갖춘 임원(상임이사, 선임직 이사, 감사)이 객관적 검증을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 정관 제·개정, 예산 집행 등 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관 제·개정시 반드시 의회의 의견(동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장에게 보고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임원(상임이사, 선임직 이사, 감사) 임명 방식 개정
 -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 사무국 직원 임면 및 기구에 관한 사항 구체화

-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임원(상임이사, 선임직 이사, 감사)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8인(시장 추천 4, 의회 추천 4 - 의원 제외)
 - 임원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
 - 임원추천위원회 기능 : 상임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 추천
- 재단의 운영재원에 시의 보조금 항목 추가
- 재단에 대한 의회 감사 기능을 명확히 하여 규정
 - 시장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
⇒ 시장 및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를 받고 감사할 수 있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6. 8. 24. ~ 2016. 8. 28.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회의장)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749-4958, 팩스 061-749-4773)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전에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를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이사장이 임명하며”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무국 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부터 제20조를 제11조부터 제2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8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4명
2.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중 “시의 출연금”을 “시의 출연금·보조금”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및 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를 받고 감사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정관) ① (생략) ② …… 사전에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장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생략) ② ……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 ③ …… 이사장이 임명하며 ……. ④ (생략)	제6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 ③ ……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사무국 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8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4명 2.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운영재원 등) …………… <u>시의 출연금, …….</u>	제11조(운영재원 등) …………… <u>시의 출연금·보조금, …….</u>
제11조 (생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 (생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 (생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 (생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 (생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 (생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 (생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u>시장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 및 검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하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u>	제2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u>시장 및 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를 받고 감사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생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